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제1423호

다. 제출일자: 2023. 10. 16.

라. 회부일자: 2023. 10. 23.

### 2. 제 안 사 유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처리시설로서 위탁 기간이 '24.3.31.자로 만료될 예정임.
- 민간의 전문성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서울도시금속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할 위탁운영 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 필요성 및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 등의 자원순환 관리체계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다. 위탁사무 내용

- 센터의 시설 운영 및 관리
- 센터의 근로자 고용 및 관리
-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운반
-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
-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새로운 수거 체계 확보 및 구축
-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
-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확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사무추가) 봉제원단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와 사전협의하여 위탁업체의 업무로 결정된 사항

라. 시설개요

- 시설명: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73-36, 차량정비센터 내)

- 규모: 건물 810 $m^2$ , 부지 2,257.5 $m^2$ (준공일 2009.12.9.)
- 처리능력: 중·소형 폐가전 5,000톤/년, 폐휴대폰 70만대/년

**마. 위탁기간: 3년('24. 4. 1. ~ '27. 3. 31.)**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09.12.~'11.12.(신규 위탁, 에코시티서울 컨소시엄)
- 2차: '12.1.~'14.12.(자립형, (주)에코시티서울, 재계약)
- 3차: '15.1.~'18.3.(자립형, (주)에코시티서울, 재계약)
- 4차: '18.4.~'21.3.(시설형, (주)에코시티서울, 신규위탁(공모))
- 5차: '21.4.~'24.3.(시설형, (주)에코시티서울, 재계약)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23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3. 9. 25.)

**사. 소요예산: 3,234백만원(2024년)**

- 민간위탁금: 3,014백만원(인건비 2,049백만원, 경비 등 965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안): 220백만원

**아. 기대효과**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이하 “SR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24.3.31.)로 인한 재위탁(공개모집)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 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 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나. 검토 의견

#### 1)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SR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5조1)에

1)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 2)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동의안에는 제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시설 위치도가 누락되어 있는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안이 제출되도록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3) 민간위탁 추진 절차

- SR센터 운영사업은 2023년 9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권고)<sup>2)</sup>으로 심의한 바 있음.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공모)사업은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재까지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2023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비고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SR센터)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재위탁	3년	적정 (권고)	[권고] - 도시금속회수 목적과 다른 봉제원단 폐기물 처리 사업 추가에 대해 재검토 필요 - 시설 현대화,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센터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면 센터 명칭 변경 검토 (예: 도시자원회수 센터)

2) 2023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자원순환과)(조직담당관-10428, '23.9.25.)

#### 4) 신규 사무 추가 사항 검토

- 서울시는 봉제원단 폐기물<sup>3)</sup>에 대해 재활용률 100%('28년~)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시 전용 집하장을 SR센터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sup>4)</sup>을 수립한 바 있음.

본 동의안에는 기존 SR센터 사무 외에 봉제원단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한 예산 1억 7천5백만원(집게차 구입 1억 2천만원, 야적장 공사 5천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4년 예산안에는 미반영되어 있는 바, 현시점에서 동의안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SR센터 내 봉제원단 폐기물 전용 집하장 설치 운영 계획>

---

- 위치: 성동구 송정동 73-86(중량물재생센터 부지 내, 슬러지적치장 옆 유희공간)
  - 면적: 가설건축물 1,400㎡(10m×20m×7m)
  - 폐기물 반입량: 8톤/일(3개구 참여의사 제출, 광진(4톤), 도봉(2톤), 노원(2톤))
  - 사용기간: 2024.1.1.~2026.12.31.(3년)
  - 소요예산: 최초 계획 50,000천원, 동의안 175,000천원
- 

#### 5)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개선 요청사항 요약

- **종합점수:** 80.85점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8.)의 재계약 기준점수인 75점 이상을 획득하였음. 이는 강남(77.74점)과 마포(78.31점)자원회수시설 등 기후환경본부 내 다른 민간위탁 기관보다 높은 수준임.
- **조직 및 인력 운영:**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이해도가 높고,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배려 계층의 인력 채용 노력이 있는 점은 긍정

---

3) 서울시 봉제원단 발생량: 46,356톤/년(매립 56%, 소각 4%, 재활용(고형연료) 40%)

4) 봉제원단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매립량 감축위한 전용거점센터 구축 운영계획(자원순환과-11954, 23.7.3.)



적이나, 직원에 대한 종합적 성과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재정 구조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예산 집행률은 97.5%로 양호하고, 관리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관리하고 있으며, 경영 투명성 확보 노력이 있으나 의무교육인 청렴 교육이 시행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사업 성과: 수거 반입량 및 재활용률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적 인정률 역시 100%를 달성하였음. 다만,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목표인 60%를 매년 초과 달성하고 있으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지도점검 결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건의 지적사항은 경미한 것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음.

## 5) 종합 의견(결론)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절차와 내용상 문제는 없고, 기존 민간위탁 사업자의 성과보고서 종합점수는 85점을 상회하여, 기후환경본부 내 민간위탁 기관들보다 높은 수준임.

다만, 동의안의 추가 사무인 봉제원단 폐기물 관리·처리에 관한 예산은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현 상황에서 동의안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선행한 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할 것임.

**참 고**

**예산 세부 산출내역(SR센터)**

민간위탁금 3,014,875,340원, 민간위탁사업비 220,000,000원

구 분		2024 예산(안)	비고
인건비	인건비	2,049,094,283	55명
	인건비소계	2,049,094,283	
경비	인적 보험료	202,219,212	
	복리후생비	163,281,320	
	안전점검비	22,691,000	
	차량유지비	63,365,000	
	통신비	1,565,600	
	여비교통비	1,180,000	
	소모품비	33,300,000	
	도서인쇄비	190,000	
	안전관리비	45,684,000	
	지급수수료	3,499,400	
	전력비	45,780,000	
	연료비	8,157,088	
	용수비	2,799,600	
	폐기물처리비	163,942,400	
	건물보험료	400,000	
	수리수선비	48,658,000	
	경비 소계	806,712,620	
	소계(순원가)		2,855,806,903
일반관리비		57,116,138	순원가의 2%
이 윤		101,952,306	(순원가+일반관리비)의 3.5%
합 계		3,014,875,340	
민간위탁 사업비	작업대교체	45,000,000	
	집계차 구입	120,000,000	
	폐원단 처리 야적장 공사	55,000,000	
합 계		220,000,000	